

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

[illegible]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행실적을 제출합니다.

- 첨부 1. 지하안전평가서 등 1부
2.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
3. 기술심의(자문) 증빙자료[기술심의(자문)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]
4. 참여 기술자 명단(성명, 생년월일,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, 용역 참여기간)

년 월 일
 보고자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